

 울릉크루즈 (주)

# Web Contents

2025년 02월 17일 01시 02분



# 목차

목차	2
공지사항	3
[중요공지] 연안여객선 운송약관 변경 안내(24.07.22)	3
첨부파일(2)	4

[중요공지] 연안여객선 운송약관 변경 안내(24.07.22)

작성일 2024.07.17 13:36 등록자 올룽\_관리자 조회수 713

올룽크루즈

## 연안여객선 운송약관 변경 고지 안내

올룽크루즈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리며,  
**2024년 7월 22일부터** 아래와 같이 연안여객선 운송약관이  
개정되어 변경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.

**개정 사유 및 내용**

- ✓ 운송의 거절 및 취소(안 제 23조 항목 일부 문구 변경)  
→ 개정 이유 : 기존 운송의 제한(거절) 및 취소가 여객 및 수하물에만 한정되어  
기준이 애매하여, 자동차 및 건설장비의 운송 문구를 추가함.
- ✓ 운송의 거절 및 취소(안 제 23조 내 15,16번 항목 추가)  
→ 개정 이유 : 최근 전기자동차(이하 EV) 화재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,  
안전한 선박 운항을 위해 전기차의 충전율(40%)을 제한한 선적을  
진행하고자 하며, 실제 일부 정부(그리스)에서는 고전압 배터리  
최대 충전 수준 40% 이상일 경우 페리 선적을 금지하고 있음.

올룽크루즈(주)

## 연안여객선 운송약관 시·구조무 대비표

(<http://www.tssc.co.kr>)

현행	개정안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 2장 여객운송 제 4절 여객의 의무 제 23조(운송의 거절(제한) 및 취소)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객에게 통고한 이후에는 당해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을 제한(거절) 및 취소 할 수 있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 2장 여객운송 제 4절 여객의 의무 제 23조(운송의 거절(제한) 및 취소)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객에게 통고한 이후에는 당해 여객 및 수하물, <u>자동차 및 건설장비의 운송을 제한(거절) 및 취소 할 수 있다.</u>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 2장 여객운송 제 4절 여객의 의무 제 23조(운송의 거절(제한) 및 취소) 15. 없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 2장 여객운송 제 4절 여객의 의무 제 23조(운송의 거절(제한) 및 취소) 15. <u>전기자동차에 사고·충돌 이력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.</u>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 2장 여객운송 제 4절 여객의 의무 제 23조(운송의 거절(제한) 및 취소) 16. 없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 2장 여객운송 제 4절 여객의 의무 제 23조(운송의 거절(제한) 및 취소) 16. <u>전기자동차의 충전율이 40%를 초과하는 경우.</u></li> </ul>



2024년 7월 22일(월)부터 다음과 같이 연안여객선 운송약관 변경 내용을 안내합니다.  
 변경된 약관은 울릉크루즈 홈페이지-운항정보공개 게시판에서 조회 가능합니다.

첨부파일(2)

- 24.07.17\_여객운송약관 변경안내-01.jpg 37 hit/ 2.20 MB [다운로드](#)
- 24.07.17\_여객운송약관 변경안내-02.jpg 29 hit/ 2.35 MB [다운로드](#)

목록



# Web Contents